

외국인교수 사택운영 규정

- 제 1 조 (목적)** 이 규정은 호서대학교(이하 본 대학교라 함)에 재직하는 외국인 교수의 사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 2 조 (입주대상)** 본 대학교에 재직하는 외국인 교수가 입주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로 외국인 교수사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자는 입주할 수 있다.
- 제 3 조 (운영위원회)** ① 본 대학교 외국인 교수사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-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제협력원장이 되고, 위원은 5명 이내로 두며, 위원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.(개정 2015. 5. 1)
- ③ 위원장의 임기는 국제교육원장의 보직기간 동안이며,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-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1.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
 2. 입주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
 3. 사택 보수 및 이에 부수되는 사항
 4.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- ⑤ 위원회의 사무는 국제협력원에서 담당한다.(개정 2015. 5. 1)
- 제 4 조 (입주기간)** ① 외국인 교수는 계약기간으로 한다.
- ② 외국인 이외의 경우에는 한 학기 단위로 하며,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
- 제 5 조 (입주절차)**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소속 학장 및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입주신청서(서식 제1호)와 각서를 국제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 6 조 (시설물)** ① 입주자는 기존 시설물 및 집기의 분실이나 파손이 없도록 사용에 유의하여야 하며 임의로 개조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.
-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변상한다.
- 제 7 조 (준수사항)** 입주자는 제반 운영규칙을 준수하고,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, 이를 위반한 행위를 했을 때에는 위원장이 퇴거를 명할 수 있다.
- 제 8 조 (사용료)** ① 본 대학교는 외국인 교수를 제외한 사택 입주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한다.
- ② 사용료는 총장이 정하되 시세에 준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③ 사용료는 월정액으로 하고 매월 봉급에서 공제하며 숙소관리비로 사용한다.
- 제 9 조 (관리비)** 입주자는 소정의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- 제 10 조 (기타)** 기타 운영에 필요로 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결정 공고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(서식 제1호)

입 주 신 청 서

성 명 (Name in Full)	한 글 (Korean)	영 문 (English)
성 별 (Sex)	<input type="checkbox"/> 남(M) <input type="checkbox"/> 여(F)	국 적 (Nationality)
소 속 (Place of Employment)		
직 위 및 직 책 (Position)		
본 국 주 소 (Address in Home Country)	(Phone.)	
비 고 (Reference)		

위와 같이 숙소 입주를 신청 합니다.

20 년 월 일

신 청 인
(Applicant)

㉠
(Signature)

추천인 직 위 성명
(Recommender) (Position) (Name)

㉠
(Signature)